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
[시행 2021.11.18] (전부개정) 2021.11.18 조례 제2573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주민행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55960490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화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매장"이란 시신(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)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(葬事)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화장"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자연장(自然葬)"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을 수목・화초・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개장"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연고자"란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.
- 6. "화장장려금(이하 "장려금"이라 한다)"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) ① 함양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수 있다.

- 1. 사망일 현재 함양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
- 2.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- 3.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
- 4.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)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 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
-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. 이 경우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.

제4조(지원 금액) ① 군수는 1구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. 다만,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비용이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다.

제5조(지원 제외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

- 1.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
- 2.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
- 3.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

제6조(신청) 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.
- 1. 천재지변, 질병,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
- 2.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급) 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환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<제정 2016. 1. 6. 조례 제222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적용한다.

부칙<전부개정 2021. 11. 18. 조례 제257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